

## <붙임 1>

◎ 교육부 공고 제 2014- 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교육부장관

### 1. 제안이유

학교 교육과정(방과후학교 과정 포함)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4. 3. 11. 공포, '14. 9. 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 입학 전형 반영 금지 사항, 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선행교육 예방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칭)”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입학 예정 학생 대상 반배치고사에서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 금지 및 신입생 대상 입학 전 선행교육을 금지함.(안 제3조)
- 다. 학교의 입학 전형시 반영 금지 사항 및 대상학교 범위와 학교 및 대학등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의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교육부장관 소속 및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 마. 교육관련기관의 위반 여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자료 보고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9조)
- 바. 시정·변경 명령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이행 보고 의무 부여 및 미이행에 대한 관련 교원의 징계 의결 요구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사. 시정·변경명령 또는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이의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 아. 교육감 권한 중 초·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역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16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5.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334 (FAX : 044-203-670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 1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교육,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4.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지원
5. 그 밖에 선행교육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2009.3.27 이전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학교
6. 그 밖에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또는 외부 사설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캠프,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을 말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최종 합격

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심의 결과를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학 입학전형의 영향평가)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이하, 대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대학 입학관련 보직 교수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 관한 전문가
3.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를 10년 이상 가르친 교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총(학)장의 추천을 받

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대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학습이론 전문가, 각급 학교 교사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의 범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회에 문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고·조사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통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 이행 및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 징계)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관련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착오 또는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경징계 의결 요구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징계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명기되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여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의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적절성만을 판단하며 행정처분의 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

③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의 적절성 심의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과통지)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및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는 이의신청의 적합 또는 부적합과 그 판단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2.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
3.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권
4.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 14조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마.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불이행	2차 불이행
1. 제 8조 제 1항 위반 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위반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한 경우 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  -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  -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p>2. 제 8조 제 2항 위반</p> <p>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한 경우</p> <p>나. 각종 교내 대회에서 당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p> <p>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p>	<p>-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p>	<p>-학교운영경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p>
<p>3 제 9조 위반</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전형에 있어서 그 전형내용과 방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p> <p>나. 해당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지 않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는 경우</p> <p>다.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경우</p>	<p>-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p>	<p>-학교운영경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p>
<p>4. 제 10조 위반</p> <p>가. 입학전형에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시·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함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 경우</p>	<p>-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p> <p>-향후 1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제한</p>	<p>-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p> <p>-향후 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제한</p>

## 「공교육 정상화법」 및 시행령(안) 2단 비교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li> <li>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li> </ol>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시·도교육과정”이라 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p> <p>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 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p>	<p>제2조(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교육,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분석</li> <li>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 및 일반인에 대</li> </ol>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한 교육과 상담</p> <p>3. 선행교육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p> <p>4.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지원</p> <p>5. 그 밖에 선행교육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p> <p>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 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p>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p> <p>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p> <p>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li> <li>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li> </ol>	<p>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li> <li>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li> </ol>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p> <p>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li> <li>2. 각종 인증시험 성적</li> </ol>	<p>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li> <li>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li> <li>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li> <li>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li> <li>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2009.3.27 이전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학교</li> <li>6. 그 밖에 선행학습을 유발하지</li> </ol>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3. 각종 자격증</p> <p>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p> <p>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또는 외부 사설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캠프,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을 말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의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심의 결과를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감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p> <p>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5조(대학 입학전형의 영향평가)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이하, 대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대학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입학관련 보직 교수</li> <li>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 관한 전문가</li> <li>3.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를 10년 이상 가르친 교사</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대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p> <p>④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p>	<p>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p>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li> <li>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li> </ol> <p>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p>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7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②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li> <li>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학습이론 전문가, 각급 학교 교사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의 범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회에 문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li> </ol>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li> <li>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li> <li>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p>	<p>제8조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li> <li>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li> </ol>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li> </ol> <p>③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⑤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그 밖에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제9조(보고·조사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통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10조(시정 이행 및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p>	<p>제11조 (교원 징계)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관련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1. 착오 또는 경과실에 의한 경우</p>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에는 경징계 의결 요구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제1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징계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p>	<p>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p>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명기되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4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여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의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적절성만을 판단하며 행정처분의 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p> <p>③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의 적절성 심의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p>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5조 (결과통지) 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및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는 이의신청의 적합 또는 부적합과 그 판단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li> <li>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li> <li>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제16조 (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p>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li> <li>2.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li> <li>3.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권</li> <li>4.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li> </ol>
<p>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 14조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마.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불이행	2차 불이행
1. 제 8조 제 1항 위반 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위반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한 경우 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 - 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 - 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p>2. 제 8조 제 2항 위반</p> <p>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한 경우</p> <p>나. 각종 교내 대회에서 당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한 경우</p> <p>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p>	<p>-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p>	<p>-학교운영경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p>
<p>3 제 9조 위반</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전형에 있어서 그 전형내용과 방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p> <p>나. 해당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지 않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는 경우</p> <p>다.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경우</p>	<p>-학교운영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p>	<p>-학교운영경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삭감</p> <p>-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p>
<p>4. 제 10조 위반</p> <p>가. 입학전형에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시·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함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 경우</p>	<p>-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p> <p>-향후 1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제한</p>	<p>-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p> <p>-향후 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제한</p>

### □ 실행 매뉴얼 마련 계획

- (목적)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구현되는데 혼란이 없도록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 매뉴얼을 통해 학교에 안내
- (집필진 구성) 5월 중으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담당 교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
  - ※ 집필진은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전문가, 장학사, 교무부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
- (매뉴얼 보급) 7월 중 “매뉴얼 시안”을 마련, 권역별 설명회, 교원 연수를 통해 안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종 완성본을 8월 말까지 각급 학교에 보급

### □ 실행 매뉴얼 주요 내용

- (1)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대
  - “학년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당 편성과목수를 학교 자율로 하는 등” 교육과정 총론상의 지침 수정
    - ※ 현재는 “학기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기당 8과목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고3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연성 확대 검토(안)〉

① 학기 단위 교과목 편성 → 학년 단위 편성

②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 → 학교 자율로 정함

(예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확률과 통계 (6단위)	기하와 벡터 (6단위)

➔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확률과 통계 (3단위)	확률과 통계 (3단위)
기하와 벡터 (3단위)	기하와 벡터 (3단위)

③ 이수단위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고교에서의 1단위를 이수한다는 것은 50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하므로 교원수급상황 등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편성도 가능

\* 1단위 = ①주 1시간×17주(4개월) = ②주 2시간×8.5주(2개월) = ③주 4시간×4.25주(1개월)

(예시1) 5단위 = ①주 5시간×17주(4개월) = ②주 6시간×8.5주(2개월)+주 4시간×8.5주(2개월)

3학년 2학기	
A 교과 (5단위)	4개월 주 5시간 운영
B 교과 (5단위)	4개월 주 5시간 운영

➔

3학년 2학기	
초반 2개월 주 6시간 운영	후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A 교과 (5단위)	B 교과 (5단위)
초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후반 2개월 주 6시간 운영

(예시2)

3학년 2학기	
A 교과 (2단위)	4개월 주 2시간 운영
B 교과 (2단위)	4개월 주 2시간 운영

➔

3학년 2학기	
A 교과 (2단위)	B 교과 (2단위)
초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후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2) 선행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

- 법에서 정한 “학교교육과정”, 즉 학교가 편성한 학기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의결로 결정할 예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학교 교육과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 현재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고 있고,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등을 연 2회(4, 9월) 공시

- 같은 학기 안에서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재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가 편성하여 제출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검토, 환류, 컨설팅 과정을 체계화
- 학기 중 교육과정 수정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 결재, 학운위 심의, 재공시 등 수정 절차도 자세히 안내

###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점검 체계화

-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단계별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컨설팅, 장학지도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유도

편성단계	운영단계	평가단계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체계화	특별 장학지도 실시	학기별 평가문항 조사

-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구체적인 법 시행과 관련한 FAQ (자주 묻는 질문) 등 실제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매뉴얼에 포함하여 법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질의응답 자료

2014. 4.

교 육 부  
(공 교육 진 흥 과)

## 목 차

- ①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 1
- ②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 2
- ③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3
- ④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자사고, 특목고만 대입에서 유리한 제도 아닌가? ..... 5
- ⑤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학교 밖 시험은 규제가 되는 것인가? ..... 6
- ⑥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 7

## ①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4월, 9월) 공시하고 있음
- 선행교육 위반여부는 학교가 공시한 교육과정의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임

### < 참고 : 교육과정 관련 공시 항목 >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시기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전체	연 1회	4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다. 수업공개 계획	초,중,고,특	연 1회	4월
	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중,고,특,각	연 1회	4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중,고	연 2회	4월, 9월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 2회	2월, 9월
	다.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초,중,고	연 2회	4월, 9월

- 다만, 타 과목과의 연계 수업, 융합수업 등을 위해 단위 학기 내에서의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 다른 학기 또는 다른 학년에 편성된 내용을 속진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임

②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 동 법 제정 취지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 고교 및 대학별 입시를 개선함으로써 이들 시험으로 인해 유발되는 선행교육 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학원 등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포함된 것임
- 학원이 학교교육을 일부 보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사교육기관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특히,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③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당초 수능준비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배제를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대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어 시행령상의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학년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당 편성과목수를 학교 자율로 하는 등”으로 교육과정 총론상의 지침을 수정하여 안내할 것임
  - ※ 현재는 “학기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기당 8과목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이미 편성·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준비하면 되고,
  - 실질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3학년으로 진입할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이 적용되는 것임

## < 참고 : 고3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연성 확대 검토(안) >

- ① 학기 단위 교과목 편성 → 학년 단위 편성
- ②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 → 학교 자율로 정함

(예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확률과 통계 (6단위)	기하와 벡터 (6단위)

➔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확률과 통계 (3단위)	확률과 통계 (3단위)
기하와 벡터 (3단위)	기하와 벡터 (3단위)

- ③ 이수단위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고교에서의 1단위를 이수한다는 것은 50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하므로  
교원수급상황 등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편성도 가능 \* 1시간 수업=50분

\* 1단위 = ① 주 1시간×17주(4개월) = ② 주 2시간×8.5주(2개월) = ③ 주 4시간×4.25주(1개월)

(예시1) 5단위 = ① 주 5시간×17주(4개월) = ② 주 6시간×8.5주(2개월)+주 4시간×8.5주(2개월)

3학년 2학기	
A 교과 (5단위)	4개월 주 5시간 운영
B 교과 (5단위)	4개월 주 5시간 운영

➔

3학년 2학기	
초반 2개월 주 6시간 운영	후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A 교과 (5단위)	B 교과 (5단위)
초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후반 2개월 주 6시간 운영

(예시2)

3학년 2학기	
A 교과 (2단위)	4개월 주 2시간 운영
B 교과 (2단위)	4개월 주 2시간 운영

➔

3학년 2학기	
A 교과 (2단위)	B 교과 (2단위)
초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후반 2개월 주 4시간 운영

**4]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자사고, 특목고만 대입에서 유리한 제도 아닌가?**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조항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모두에 적용되고,
  - 입학전형 시 반영 금지 사항의 적용, 선행학습영향평가 의무 실시 등의 규제는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규율 대상이므로 특목고, 자사고가 그 주 대상임
- 외교·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 전공 외국어 등 전문교과를 편성해야 하므로 기초교과(국·영·수) 중심으로 편성이 어렵고,
  - 자사고의 경우에도 '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초교과 위주로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결과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입시위주·선행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은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4.5.19 시행)에 따라 자사고·특목고·국제중 등에서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교육감은 언제든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참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13.10월)

- 일반고의 필수 이수단위가 116단위에서 86단위(특목고·자사고는 77단위)로 조정되고, 과목별 이수단위의 운영도 특목고·자사고와 같은 5±3단위로 조정되어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학교	자공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필수이수단위	86단위(116단위)	86단위(72단위)	86단위(72단위)	77단위	77단위
학교수	788	736	116	49	135



## ⑤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학교 밖 시험은 규제가 되는 것인가?

-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능모의평가” 등은 학생의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중간·기말고사와는 달리 학생의 실력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특히, 수능모의평가는 수능 문항을 검증하고 난이도 점검에 필요
- 이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등의 유발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령상의 학교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되,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학생의 시험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시험 시행 시기에 따라 출제 범위 조정 추진

< 참고 :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모의평가 >

- ◆ 전국연합학력평가 : 고1·2·3 대상으로 연 4회 실시(서울시교육청 주관)
  - 출제범위는 시험 시행 시기의 평균 진도에 맞추고 있음 / 학생별로 과목 선택 가능
    - ※ 3학년의 경우 거의 전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나 조정 가능
- ◆ 수능모의평가 : 고3, 졸업생 대상으로 연 2회(6,9월) 실시(평가원 주관)
  - 교과 전 범위에서 출제/ 학생별로 과목 선택 가능
    - ※ 6월 모의평가는 전범위에서 출제(수학·과학 교과는 시험 시행 시기의 평균 진도를 고려하여 운영 중)

**⑥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함께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FAQ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편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환류 등을 체계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실행 매뉴얼 주요 내용〉**

-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유의사항(법령에 대한 행정해석 포함)
- ▶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및 검토·환류 절차 체계화
- ▶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출제) 점검 방안
- ▶ 선행학습영향평가 절차
- ▶ 법안 시행 관련 FAQ 등

- 또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교가 동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편성단계	운영단계	평가단계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체계화	특별 장학지도 실시	학기별 평가문항 조사

- 또한, (가칭)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학교의 애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교장·교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공교육 정상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으로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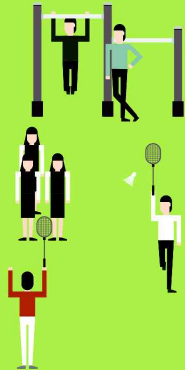
##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가 편성해서 공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입학예정학생 대상 예비수업은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입학예정학생 대상 반편성고사 등 평가는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명령하고, 미 이행시 행·재정적 제재 부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